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36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11. 8. . 중 구 청 장
------------	-----	----------------	-----------------------

1. 개정이유

- 가. 분명하지 않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사용 휴무일을 신설
- 나.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과 반환 조항을 수정 및 보완
- 다. 테니스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테니스 동호인들의 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명백히 함 (안 제2조의 1 ~ 7)
- 나. 휴무일 신설(안 제5조제3항)
- 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조항 수정 및 보완(안 제8조2, 제9조제1항1)
- 다. 함월운동장 명칭 변경 및 유곡테니스장 사용료 조정(안 별표1,2,3)

3. 근거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36조
-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 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 · 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추진일정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 다. 관련부처 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사항 : 2011. 7. 25. ~ 8. 16.(의견없음)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체육시설”이라 함은”을 “체육시설”이란”으로, “축구장 · 생활체육공원”을 “축구장 · 운동장 · 생활체육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을 “시설의 사용”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중 “사용자”라 함은”을 “사용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신설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 · 고등학생 또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6. “성인”이란 만19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7. “노인”이란 만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개방시간)"을 "(사용시간 및 휴무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방시간”을 “사용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방시간”을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개방시간”을 “사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정 · 설 · 추석 연휴기간
2.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호나목 중 “체육행사등 체육진흥”을 “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가목 중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60세 이상 노인”을 “노

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2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13세~18세)”를 “어린이,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자가 사용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6일 전에서 사용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제2조의2 관련)

시설명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원학정	성동1길 15-15	사대 및 과녁	
성안생활체육공원	함월1길 145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십리대밭축구장	태화동 800번지	인조잔디축구장 및 부대시설	
유곡테니스장	다전로 385-1	테니스장, 화장실, 관리실 등	
함월구민운동장	성동1길 2	인조잔디축구장, 야외공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준	평일	토·일·공휴일	비고
테니스장	코트당		5,000	3시간 기준
	월회원		15,000	1인 기준 (야간조명포함)
십리대밭축구장 및 함월구민운동장	체육경기	25,000 (35,000)	40,000 (50,000)	2시간 기준
	체육경기외	50,000	80,000	2시간 기준

- 팔호안의 요금은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단체 포함) 사용시 요금임
- 월회원의 코트 사용은 공휴일을 포함한 월중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예약 행사 및 대회는 우선 사용한다.

【별표 3】

부대시설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세부시설	사용료	비고
테니스장	조명시설	5,000	종목별 코트당 1회(3시간 이내) 기준
함월구민운동장	조명시설	20,000	2시간 기준
	전기사용	10,000	2시간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축구장·생활체육공원·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이란 ----- ----- ----- 축구장·운동장·생활체육공원----- ----- -----.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 ----- ----.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 ----- ----- -----.
<신 설>	4.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신 설>	5.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6. “성인”이란 만19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u>
	<u>7. “노인”이란 만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u>
<u>제5조(개방시간)</u> ① 체육시설의 <u>개방시간</u>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제5조(사용시간 및 휴무일)</u> ① -- <u>사용시간</u>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u>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방시간</u> 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체육시설별로 <u>개방시간</u> 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u>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u> ----- ----- <u>사용시간</u> ----- ----.
<u><신 설></u>	
<u>제8조(사용료의 감면)</u> (생 략)	<u>③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신정·설·추석 연휴기간</u> <u>2.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1. 사용료 면제 가. (생 략) 나. 구단위 <u>체육행사등 체육진흥</u>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생 략)	<u>제8조(사용료의 감면)</u> (현행과 같음) 1. 사용료 면제 가. (현행과 같음) 나. ----- <u>체육 및 문화예술진흥</u> ----- -----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2. 사용료 감면</p> <p>가. <u>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u>,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u>60세이상 노인</u> : 50/100</p> <p>나. <u>12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13세~18세)</u> : 30/100</p> <p><u><신 설></u></p> <p>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 략)</p> <p>1. <u>사용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u></p> <p>2. (생 략)</p> <p>3. (생 략)</p>	<p>2. 사용료 감면</p> <p>가. <u>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u>, ----- ----- -----<u>노인</u> : -----</p> <p>나. <u>어린이, 청소년</u> : -----</p> <p>다. <u>그 밖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u></p> <p>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p> <p>1. <u>사용자가 사용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6일 전에서 사용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u></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제2조의2 관련)		[별표 1]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제2조의2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명</th><th>소재지</th><th>주요시설</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원학정</td><td>성동1길 15-15</td><td>사대 및 과녁</td><td></td></tr> <tr> <td>성안생활체육 공원</td><td>함월1길 145</td><td>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td><td></td></tr> <tr> <td>십리대밭축구장</td><td>태화동 800번지</td><td>인조잔디축구장 및 부대시설</td><td></td></tr> <tr> <td>유곡테니스장</td><td>다전로 385-1</td><td>테니스장, 화장실 관리실 등</td><td></td></tr> <tr> <td>함월운동장</td><td>성안동 925번지</td><td>인조잔디축구장, 야외공연장, 화장실, 관리실 등</td><td></td></tr> </tbody> </table>		시설명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원학정	성동1길 15-15	사대 및 과녁		성안생활체육 공원	함월1길 145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십리대밭축구장	태화동 800번지	인조잔디축구장 및 부대시설		유곡테니스장	다전로 385-1	테니스장, 화장실 관리실 등		함월운동장	성안동 925번지	인조잔디축구장, 야외공연장, 화장실, 관리실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명</th><th>소재지</th><th>주요시설</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원학정</td><td>성동1길 15-15</td><td>사대 및 과녁</td><td></td></tr> <tr> <td>성안생활체육 공원</td><td>함월1길 145</td><td>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td><td></td></tr> <tr> <td>십리대밭축구장</td><td>태화동 800번지</td><td>인조잔디축구장 및 부대시설</td><td></td></tr> <tr> <td>유곡테니스장</td><td>다전로 385-1</td><td>테니스장, 화장실 관리실 등</td><td></td></tr> <tr> <td><u>함월구민운동장</u></td><td><u>성동1길 2</u></td><td>인조잔디축구장, 야외공연장, 화장실, 관리실 등</td><td></td></tr> </tbody> </table>		시설명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원학정	성동1길 15-15	사대 및 과녁		성안생활체육 공원	함월1길 145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십리대밭축구장	태화동 800번지	인조잔디축구장 및 부대시설		유곡테니스장	다전로 385-1	테니스장, 화장실 관리실 등		<u>함월구민운동장</u>	<u>성동1길 2</u>	인조잔디축구장, 야외공연장, 화장실, 관리실 등	
시설명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원학정	성동1길 15-15	사대 및 과녁																																																	
성안생활체육 공원	함월1길 145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십리대밭축구장	태화동 800번지	인조잔디축구장 및 부대시설																																																	
유곡테니스장	다전로 385-1	테니스장, 화장실 관리실 등																																																	
함월운동장	성안동 925번지	인조잔디축구장, 야외공연장, 화장실, 관리실 등																																																	
시설명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원학정	성동1길 15-15	사대 및 과녁																																																	
성안생활체육 공원	함월1길 145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십리대밭축구장	태화동 800번지	인조잔디축구장 및 부대시설																																																	
유곡테니스장	다전로 385-1	테니스장, 화장실 관리실 등																																																	
<u>함월구민운동장</u>	<u>성동1길 2</u>	인조잔디축구장, 야외공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기준</th><th>평일</th><th>토·일 ·공휴일</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테니스장</td><td>코트당</td><td>5,000</td><td>3시간 기준</td><td></td></tr> <tr> <td>월회원</td><td>10,000</td><td>1인 기준 (야간조명 포함)</td><td></td></tr> <tr> <td rowspan="2">십리대밭축구장 및 함월운동장</td><td>체육경기</td><td>25,000 (35,000)</td><td>40,000 (50,000)</td><td>2시간</td></tr> <tr> <td>체육경기회</td><td>50,000</td><td>80,000</td><td>2시간</td></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평일	토·일 ·공휴일	비 고	테니스장	코트당	5,000	3시간 기준		월회원	10,000	1인 기준 (야간조명 포함)		십리대밭축구장 및 함월운동장	체육경기	25,000 (35,000)	40,000 (50,000)	2시간	체육경기회	50,000	80,000	2시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기준</th><th>평일</th><th>토·일 ·공휴일</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테니스장</td><td>코트당</td><td>5,000</td><td>3시간 기준</td><td></td></tr> <tr> <td>월회원</td><td>15,000</td><td>1인 기준 (야간조명 포함)</td><td></td></tr> <tr> <td rowspan="2">십리대밭축구장 및 함월구민운동장</td><td>체육경기</td><td>25,000 (35,000)</td><td>40,000 (50,000)</td><td>2시간</td></tr> <tr> <td>체육경기회</td><td>50,000</td><td>80,000</td><td>2시간</td></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평일	토·일 ·공휴일	비 고	테니스장	코트당	5,000	3시간 기준		월회원	15,000	1인 기준 (야간조명 포함)		십리대밭축구장 및 함월구민운동장	체육경기	25,000 (35,000)	40,000 (50,000)	2시간	체육경기회	50,000	80,000	2시간		
구 분	기준	평일	토·일 ·공휴일	비 고																																															
테니스장	코트당	5,000	3시간 기준																																																
	월회원	10,000	1인 기준 (야간조명 포함)																																																
십리대밭축구장 및 함월운동장	체육경기	25,000 (35,000)	40,000 (50,000)	2시간																																															
	체육경기회	50,000	80,000	2시간																																															
구 분	기준	평일	토·일 ·공휴일	비 고																																															
테니스장	코트당	5,000	3시간 기준																																																
	월회원	15,000	1인 기준 (야간조명 포함)																																																
십리대밭축구장 및 함월구민운동장	체육경기	25,000 (35,000)	40,000 (50,000)	2시간																																															
	체육경기회	50,000	80,000	2시간																																															
<p>1. 괄호안의 요금은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단체포함) 사용시 요금임</p> <p>2. 월회원의 코트 사용은 공휴일을 포함한 월중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예약 행사 및 대회는 우선 사용한다.</p>																																																			
[별표 3] 부대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3] 부대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세부시설</th><th>사용료</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테니스장</td><td>조명시설</td><td>5,000</td><td>종목별 코트당 1회(3시간이내) 기준</td></tr> <tr> <td rowspan="2">함월운동장</td><td>조명시설</td><td>20,000</td><td>2시간 기준</td></tr> <tr> <td>전기사용</td><td>10,000</td><td>2시간 기준</td></tr> </tbody> </table>		구 분	세부시설	사용료	비 고	테니스장	조명시설	5,000	종목별 코트당 1회(3시간이내) 기준	함월운동장	조명시설	20,000	2시간 기준	전기사용	10,000	2시간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세부시설</th><th>사용료</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테니스장</td><td>조명시설</td><td>5,000</td><td>종목별 코트당 1회(3시간이내) 기준</td></tr> <tr> <td rowspan="2">함월구민운동장</td><td>조명시설</td><td>20,000</td><td>2시간 기준</td></tr> <tr> <td>전기사용</td><td>10,000</td><td>2시간 기준</td></tr> </tbody> </table>		구 분	세부시설	사용료	비 고	테니스장	조명시설	5,000	종목별 코트당 1회(3시간이내) 기준	함월구민운동장	조명시설	20,000	2시간 기준	전기사용	10,000	2시간 기준																		
구 분	세부시설	사용료	비 고																																																
테니스장	조명시설	5,000	종목별 코트당 1회(3시간이내) 기준																																																
함월운동장	조명시설	20,000	2시간 기준																																																
	전기사용	10,000	2시간 기준																																																
구 분	세부시설	사용료	비 고																																																
테니스장	조명시설	5,000	종목별 코트당 1회(3시간이내) 기준																																																
함월구민운동장	조명시설	20,000	2시간 기준																																																
	전기사용	10,000	2시간 기준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36)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1. 8. 25(수)
- 나. 제출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2011. 8. 30(화)
- 라. 위원회 상정 : 2011. 9. 5(월)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윤병진 총무국장)

- 가. 분명하지 않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사용 휴무일을 신설
- 나.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과 반환 조항을 수정 및 보완
- 다. 테니스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테니스 동호인들의 서비스 증진

4.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명백히 함 (안 제2조의 1 ~ 7)
- 나. 휴무일 신설(신정 · 설 · 추석 등) - 제5조제3항)
- 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조항 수정 · 보완(안 제8조2, 제9조제1항1)
- 라. 함월운동장 명칭 변경(함월구민운동장) 및 유곡테니스장 사용료 조정
(10,000원 → 15,000원)

5.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36조
-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 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6.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분명하지 않는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사용 휴무일 신설과 시설명칭변경 및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 위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체육시설 및 시설이용자들을 범위와 체육시설의 휴무일(신정·설·추석) 신설
- 사용료의 반환 규정(사용 7일 전까지 취소시 전액반납, 6일 전에서 사용 전 일까지는 100분의 50 반환) 수정 · 보완
- 합월운동장 명칭변경(합월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사용료 50% 인상 (10,000원→ 15,000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테니스장 사용료를 50% 인상에 대한 영향과 이용자들의 부담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개 정 안	수 정 안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의4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의4 “어린이”란 만5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의5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의5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